

朝鮮初期의 翼軍

李 載 槃*

序 言

- I. 翼軍조직의 정비
 1. 麗末의 翼軍
 2. 鮮初 翼軍조직의 정비

II. 軍翼道の 구조와 社會구조

1. 軍翼道の 구조
 2. 軍翼道와 社會구조
- 結 語

序 言

조선 초기의 地方支配체제에서 주목되는 것은 南方 6道에는 鄉吏制가 시행되고 있는데 비하여 평안·함경 兩道에는 이와는 달리 土官制가 시행되고 있었던 점이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의 社會구조 내지 지배구조에 대한 규명을 위하여 鄉吏나 土官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안·함경도에는 土官制에 의한 지방지배 이외에도 그 社會구조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翼軍이라는 특수한 軍事조직이 있었다. 필자는 원래 조선 초기 평안·함경 兩道の 地方支配에 관심을 갖고 土官制를 고구한 바 있거니와¹⁾ 이제 조선 초기의 翼軍조직에 대하여, 그 구조를 살펴보고, 나아가 翼軍과 在地 지방사회구조와를 연관시켜 보고자 한다.

翼軍은 원래 大陸의 軍制이거니와, 고려시대에 元의 치하에서 그 조직이 활용되다가 여말 排元정책과 함께 고려 조정에 의하여 설치되기 시작하여 조선 세종 때에 평안·함경도 전역에 軍翼道체제가 정비되었다. 그리고, 세조 때에는 전국이 軍翼道체제로 개편되고, 이어 전국이 鎭管체제로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이 翼軍에 대하여는 몇개의 연구업적이 있으나²⁾ 조선 초기의 翼軍에 대하여는 翼軍조직의 정비과정이나 그 구조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없을 뿐 아니라 翼軍 연구를 통한 지방사회의 支配구조와의 연관 등에는 전혀 言及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고려말 조선초에 翼軍의 정비과정을 정리해 보고, 이어 翼軍과 兩道の 社會구조와를 연관시켜 고구하고, 나아가 翼軍을 통하여 조선초기의 평안·함경도의 地方支配체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바이다. 아울러 세조

* 文理科大學 史學科 教授

1) 拙稿 「朝鮮初期의 土官에 對하여」(震禮學報 第29・30合併號, 1966).
2) 內藤雋輔 「高麗兵制管見」(「靑丘學叢」 15・16, 1934) : 「朝鮮史研究」 1961. 중의 翼軍 항목, pp. 255~262. 白南雲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1937, 중의 翼軍 항목 pp. 700~704. 閔賢九 「近世朝鮮前期 軍事制度의 成立」 중 東·西北面 翼軍體制의 整備 항목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1968), pp. 142~152. 李基白 「高麗末期의 翼軍」(「李弘植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69).

때에 兩道の 軍翼道체제가 전국에 확장되고, 이내 전국이 鎮管체제로 정비되거나, 이 鎮管체제로서 지방군제가 정비되는 의의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바이다.

I. 翼軍조직의 정비

1. 麗末의 翼軍

고려왕조는 元의 침략을 받은 이후, 고려의 지방軍制인 南道の 州縣軍과 兩界의 州鎮軍 체제가 무너지고 元의 行政軍事단위인 萬戶·千戶·百戶 등의 제도로 개편되어 갔고, 萬戶·千戶·百戶 등을 바탕으로 翼軍조직이 활용되었다.

元은 고려를 침략하던 당초에 和州에 雙城摠管府를 설치하고, 거기에 摠管과 千戶 등을 두었으며³⁾, 이어 麗蒙연합군이 日本을 정벌하던 때에는 萬戶府를 설치하고 中軍 右軍 左軍 등을 두었으며, 뒤에 開京에 巡軍萬戶府를 비롯하여 慶尙·全羅·耽羅·西京 등의 요지에 萬戶府를 설치하였다.⁴⁾ 그리고, 이 萬戶府에는 元制와 같이 都萬戶·上萬戶·上副萬戶·萬戶·副萬戶·鎮撫·上千戶·千戶·提控 등의 지휘관이 배치되고 되었으니 地方의 萬戶府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⁵⁾

또한, 이 萬戶府에는 元의 翼軍체제가 도입되어 있었다. 충렬왕 즉위년의 제 1차 여몽연합군의 日本정벌 때에 中軍 左軍 右軍 등 3軍으로 조직되었는데, 그것을 翼軍이라 이름하였다.⁶⁾ 또한, 충렬왕 13년에 乃顔大王의 謀叛을 듣고, 이를 정벌하기 위하여 원조의 병력을 신청하자, 왕이 이를 허락하고, 토벌장군에게 左翼萬戶·中翼副萬戶 등 翼軍조직에 따른 兵官職을 주고 있다.⁷⁾ 위와 같이, 元의 지배하에 고려의 지방군사조직은 元의 영향 아래 萬戶府가 설치되고, 거기에 萬戶 千戶 등의 兵官이 배치되고, 또한 翼軍조직도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왕조는 공민왕 때부터 元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 軍事조직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민왕 때에 이르러 元이 쇠미해지고, 고려는 강력히 排元정책을 써서 元의 현지 지배관청이던 征東行中書省理問所를 혁파하고, 雙城摠管府를 공략하여 그 옛 疆土를 수복하며, 親元派를 일소하고, 옛 官制를 복구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元

3) 龍津縣人趙暉·定州人卓青 以和州以北附蒙古 蒙古置雙城摠管府于和州 以暉爲摠管 青爲千戶 (『高麗史』卷 24, 世家 卷 24, 高宗 45年 12月 己丑條).

4) 政堂文學李仁復如元上表曰……世皇東征日本時所置萬戶中軍右軍左軍耳 其後增置巡軍·合浦·全羅·耽羅·西京等萬戶府 並無所領軍 (『高麗史』卷 39, 世家 卷 39, 恭愍王 5年 10月 戊午條).

5) 『高麗史』卷 77, 志 卷 31, 百官志 諸司都監各邑 巡軍萬戶府 항목.

6) 都督使金方慶將中軍……金仇爲左軍使……金文庇爲右軍使 號三翼軍 (『高麗史』卷 28, 世家 卷 28, 忠烈王 即位年 10月 乙巳條).

7) 閱兵訖 親祭纛于宮門 以金周鼎虎頭牌賜朴之亮爲左翼萬戶 朴球虎頭牌賜羅裕 爲中翼萬戶……王將親助征 癸酉 公主錢于涼樓 兼慰赴征將士 朴之亮日晏赴宴 不知王御樓 騎而直至樓下 王怒削其職 奪虎頭牌 賜韓希愈爲左翼萬戶 之亮爲副萬戶 (『高麗史』卷 30, 世家 卷 30, 忠烈王 13年 6月 己巳·癸酉條).

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가 오랜 元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고려 스스로 새로운 軍事조직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공민왕 5년에 고려는 元에서 준 諸軍의 萬戶·鎭撫·千戶·百戶 등의 牌를 거두어 들이고⁸⁾ 自主적으로 軍事조직을 편성하게 되었다. 특히, 元과의 국경선인 兩界 지방의 군사조직에 유념하게 된다. 그리하여, 공민왕 6년에는 金得培를 西北面都巡問使兼西京尹上萬戶로 삼고⁹⁾, 이어 공민왕 7년 6월에는 叅知政事 慶千興을 西京軍民萬戶府 萬戶, 叅知政事 安祐를 安州軍民萬戶府 萬戶, 樞密院 副使 鄭暉를 朔方道軍民萬戶府 萬戶로 삼아 西北面に 3萬戶府를 설치하였다.¹⁰⁾ 그리고, 공민왕 18년에는 西北面に 西京萬戶府·安州萬戶府·義州萬戶府·泥城萬戶府·江界萬戶府 등 5萬戶府를 설치하고 上萬戶·副萬戶 등을 두었다.¹¹⁾

위와 같이, 西北面에서 공민왕 7년에 설치된 3軍民萬戶府나 공민왕 18년에 설치된 5萬戶府는 翼軍이란 말은 표현됨이 없으나 翼軍임이 분명하다. 즉, 高麗史 卷 81, 兵志 1, 兵制, 禡王 3年 正月條에,

新置安州二翼軍 號新勇·新猛 安州本有八翼 今更爲二翼 總十翼 與西京軍同

이라고 한 기사와 대조하여 보면, 공민왕 18년의 萬戶府에 소속된 軍이 곧 翼軍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민왕 7년의 3軍民萬戶府도 翼軍조직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한편, 東北面에서의 翼軍의 설치에 대하여는 종래 후술할 바이지만 禡王 4년 12월에 南道 지방과 함께 약 6개월 동안만 설치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고려말에 東北面에도 西北面에서와 같이 翼軍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종래, 東北面 翼軍의 置廢를 南道지방과 같다고 보는 견해의 근거는, 첫째 禡王 4년 12월에 翼軍을 설치할 때에 南道지방과 함께 東北面에도 計點使를 파견하여 翼軍을 설치하였다는 점, 둘째 禡王 5년 윤 5월에 翼軍을 폐할 때에도 西北面의 事例에 對比하고 있는 점, 셋째 南道 지방에 翼軍을 설치함에 따른 폐해를 논할 때에도 西北面과 對比시켜 표현하고 있는 점들이다.¹²⁾ 그러나, 禡王 3년 開城府의 上狀에,

各道各官 依東西北面例 各翼設立事¹³⁾

8) 命收諸軍萬戶鎭撫千戶百戶牌(『高麗史』卷 39, 世家 卷 39, 恭愍王 5年 5月 壬寅條).

9) 以樞密院直學士金得培爲西北面都巡問使兼西京上萬戶(『高麗史』卷 39, 世家 卷 39, 恭愍王 6年 11月 庚申條).

10) 以叅知政事慶千興爲西京軍民萬戶府萬戶……叅知政事安祐爲安州軍民萬戶府萬戶……樞密院副使鄭暉爲朔方道軍民萬戶府萬戶(『高麗史』卷 39, 世家 卷 39, 恭愍王 7年 6月 癸未條).

11) 令西京萬戶府 左翼·右翼·前軍·後軍·精銳·精毅·忠健·忠毅·新食·新成十軍 安州萬戶府 左勇·右勇·左猛·右猛·前勇·後勇·前猛·後猛 八軍 義州萬戶府 左精·右精·忠信·義勇 四軍 泥城萬戶府 鎭平·鎭江·鎭靜·鎭遠 四軍 江界萬戶府 鎭邊·鎭成·鎭安·鎭寧 四軍 皆置上副萬戶(『高麗史』卷 41, 世家 卷 41, 恭愍王 18年 8月 乙丑條).

12) 李基白「高麗末期の 翼軍」(『李弘植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1969) p. 204.

13) 『高麗史』卷 81 志 卷 35, 兵志 1, 禡王 3年 7月條.

란 기록이 있으며, 또한 공민왕 18년에 翼軍의 설치 기사로서,

自秋以來 東西北面要害 多置萬戶千戶 又遣元帥 將擊東寧府 以絕北元¹⁴⁾

이라 하였고, 앞서 예거한 禡王 5년 윤 5월에 憲司의 上疏에서 表題가 「論五道新置翼軍之弊」¹⁵⁾라고 하여, 東北面도 西北面과 같이 翼軍이 설치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료들이 있다. 그리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함경도의 府·牧·郡·縣을 조사해 보면 고려말에 翼軍이 설치되었음이 분명해진다.

고려는 공민왕 5년에 樞密院 副使 柳仁雨 등으로 雙城摠管府를 공략하여 威興 이남을 수복하였거니와 威興府에 곧 萬戶府를 두어 경영하였다고 하였으니 공민왕 5년이나 머지 않는 후일에 萬戶府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¹⁶⁾, 공민왕 5년에 北靑에도 安北千戶防禦所가 설치되고 있고¹⁷⁾, 뒤에 공양왕 2년에 吉州等處管軍民萬戶府가 설치되고¹⁸⁾, 공양왕 3년에는 甲州에도 萬戶府를 설치하였다.¹⁹⁾ 그러므로, 고려말까지에는 吉州와 甲山을 잇는 선 이남 지역을 그 세력권 안에 넣게 되었으며, 고려가 새로 경영하게 되는 지역에는 萬戶府 또는 千戶所 등을 두어 翼軍을 설치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翼軍은 西北面에서는 그 전지역을 망라하여 설치되고 東北面에서는 吉州와 甲山을 잇는 선 이남의 땅에 설치되었거니와, 兩界 州鎮軍에서 주축을 이루던 抄軍·左軍·右軍 등의 핵심적인 戰鬪부대 조직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農民이자 軍人이기도 한 翼軍으로 재편성되었던 것이다.²⁰⁾ 고려말에 翼軍의 설치는 제도적으로 元의 萬戶府내지 翼軍조직을 본따온 것 같으나 그 실체는 고려 초기 州鎮軍조직을 재편성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조선왕조 문종 때 藝文館 提學 李先齊의 上書에 「高麗式目形止案」의 일부분을 抄出하여 고려 전기 平安道の 州鎮軍을 설명하면서 高麗의 州鎮軍을 西北翼軍의 제도와 同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²¹⁾, 太宗 7년에 永興府의 土官制를 詳定하는 내용에 永興府 土官의 衛領職인 西班의 鎮北衛에 中郎將·郎將·別將·隊正 등의 官職名이 보이는데²²⁾, 그것은 고려 전기 兩界 州鎮軍의 관직명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여말에 翼軍은 西北面 전역과 東北面의 일부에 설치된 데 이어 南道지방에도 일시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바 있다. 즉, 禡王 4년 12월에 東北面 全羅道 楊廣道 江陵道 西海道

14) 「高麗史」卷 41, 世家 卷 41, 恭愍王 1 年 11 月 辛未條.

15) 「高麗史節要」卷 31, 禡王 5 年 閏 5 月條.

16) 恭愍王 5 年 命我桓祖 攻破雙城 收復舊疆 爲知咸州事 尋改萬戶府 置營(「新增東國輿地勝覽」卷 48, 威興府).

17) 恭愍王 5 年 收復舊境 置安北千戶防禦所(「新增東國輿地勝覽」卷 49, 北靑都護府).

18) 恭愍王時收復 恭讓 2 年 置吉州等處管軍民萬戶府(「新增東國輿地勝覽」卷 50, 吉城縣).

19) 高麗恭讓王 3 年 始置甲州萬戶府(「新增東國輿地勝覽」卷 49, 甲山都護府).

20) 李基白 前揚論文 p. 206.

21) 「文宗實錄」卷 4, 文宗 即位年 10 月 庚辰條.

22) 「太宗實錄」卷 14, 太宗 7 年 9 月 辛亥條.

交州道 慶尙道 등 전국적인 규모로 西北面의 예에 따라 翼軍을 설치하였다.²³⁾ 南道 翼軍의 설치 경위는 이 때에 翼軍의 설치를 倭寇가 멎을 때까지라는 기한부의 임시적 조치로 되어 있으나 倭寇가 쉬 종식되지 않을 당시의 사정으로는 반영구적인 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翼軍체제의 내용을 상고해 보면, 첫째 그 指揮체제는 지휘관을 모두 관직이 있는 자들로 임명하되 청백하고 射御에 능한 자로 규정하고, 千戶는 奉翊으로부터 4품까지, 百戶는 5품에서 6품, 統主는 參外로서 임명하였다. 둘째, 翼軍 소속 軍人은 7품 이하의 兩班과 百姓 및 才人·禾尺이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翼軍의 주축은 白丁軍 [혹은 農民軍이었다. 세째, 翼軍 소속 軍人은 武器를 自辦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6품 이상은 武器를 각자의 자유 선택에 맡기고, 7품 이하는 武器의 종류까지 일정한 융통성을 두면서 지정되어 있었다. 네째, 翼軍의 훈련은 千戶 百戶 統主가 인솔하고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點檢은 元帥府와 軍目道 장관의 소임으로 되어 있었다. 元帥府는 地方兵을 징집해서 倭寇의 방에 당하고 있는 元帥의 軍府이고, 軍目道는 京·都讓府·牧 등 界首官이 임명되는 지방행정 단위에 兵馬使를 파견하여 군대를 調發케 하는 單位道이었다.²⁴⁾

위와 같은 편성 운영내용을 가진 翼軍을 실시하기 위하여 全羅道·楊廣道·江陵道·交州道 및 慶尙道와 그리고 東北面에 각기 사람을 파견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설치된 셈인데, 이때에 東北面의 경우에는 앞서 예거한 바와 같이 이미 翼軍이 설치된 지역을 제외한 여타의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南道の 翼軍은 설치되지 1년도 못되어 禡王 5년 윤 5월에 폐지되고 말았다. 南道에 설치된 翼軍이 폐지된 원인은 南道지방이야말로 국가의 貢賦 差役이 모두 여기에서 나오는 곳인데, 翼軍으로 인하여 농민이 실업하게 되어 그 貢賦 差役이 불가능하여 國勢가 날로 궁핍하여졌기 때문이었다. 翼軍의 조직은 결국 농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짊어지우는 결과를 가져와서 농민의 流民化를 촉진시키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동요시키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까닭에 南道の 翼軍은 설치되지 6개월만에 폐지되고 말았던 것이다.²⁵⁾

2. 鮮初 翼軍조직의 정비

조선 초기의 地方軍制를 世宗實錄 地理志에서 보면, 水軍은 전국의 연안에 배치되어 있고,

23) 遣柳曼殊于東西面 吳季南于全羅道 安翊于楊廣道 南佐時于江陵道 王安德于西海道 慶補于交州道 計點戶口 依西北例 置左右翼軍 惟慶尙道令都巡問使襄克廉掌之 後憲司上疏罷之(「高麗史」卷 133, 列傳 卷 46, 禡王 4年 12月條).
 24) 都堂議置軍翼 遣各道計點元帥下旨 限倭寇寢息 依西北面例 各道皆置軍翼擇清白能財御者 自奉翊至四品爲千戶 五·六品爲百戶 參外爲統主 千戶統千名百戶百名 統主十名 錄軍籍 其餘三品至六品 分居屬翼 備軍器衣甲 以兩班·百姓·才人·禾尺爲軍人 人吏·驛子·官寺·倉庫·宮司奴·私奴爲烟戶軍 定頭目 聽自願備弓箭槍劍中一物 五人儲白一·斧三·鎌二 各其官押領習戰令元帥府及軍目長官點檢 無事歸農 有變押領赴任 違者以軍法論 流移魁首及引誘許接人 並皆軍法斷罪(「高麗史」卷 81 志 35, 兵志 1, 兵制 禡王 4年 12月條). 李基白 前揭論文 pp. 207~210.

陸軍으로서는 南方 6도에 營鎮軍을 主力으로 한 營鎮이 배치되어 있으며, 平安·咸吉 兩道에는 翼軍을 主力으로 한 軍翼道체제로 되어 있다. 이제 平安·咸吉道에서 翼軍이 조선 건국 이래 세종 때 軍翼道체제로 정비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太祖 2년 5월에 전국의 軍籍이 작성되고 중앙에 보고되었는데, 이때 西北面과 東北面の 것은 누락되어 있는 바²⁶⁾, 이것은 北方지역의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西北面과 東北面은 翼軍조직이라는 行政軍事조직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즉, 남방 6도는 중앙에서 직접 파악한 데 비하여 平安·咸吉 兩道는 在地의 支配구조로서 그 지방을 파악하고 있었다.

西北面에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여말에 西京을 비롯하여 安州 義州 泥城 江界 등에 萬戶府가 설치되고 그 지역이 軍目道체제로 편성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 태조 원년에 大司憲 南在 등의 上言에 의하면, 西北面에는 平壤道에 10翼, 安州道에 10翼 그리고 義州道에 4翼 합하여 24翼이 두어지고, 每翼에는 千戶 1인이 배치되어 士卒을 훈련하고 병기를 갖추어 놓고, 無事時에는 歸農하며 有事時에는 出擊하는 체제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이 南在 등의 上言에는 여말 西北面の 5軍目道 중, 3軍目道만이 거론되고 있어 여타의 泥城과 江界의 두 軍目道는 邊方이기 때문에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太宗 7년에 西北道都巡問使 李龜鐵이 道內事宜를 上啓하는 중에, 道內的 軍丁은 戶首와 奉足을 합하여 5만 4천여명인데 그 중에서 翼軍 14翼의 戶首와 奉足の 합계는 2만 3천여명이라 하고 있다.²⁸⁾ 그러므로, 西北面에는 太祖 2년에 平壤·安州·義州 등 3軍目道에 24翼이었던 것이 太宗 7년에는 몇개의 軍目道로 편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전체 14翼으로 편제되어 있으니 새로운 翼軍의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世宗 6년에는 平安道는 軍翼道체제로 정비되었다. 世宗 6년 吏曹의 上啓에 의하면 平安道 各翼屬 郡縣의 多少가 한갓지 아니하고 軍額이 고르지 못하며, 또한 江東·三和·安州·孟山·陽德·義州·定寧·朔州·江界 등의 郡縣은 소속이 없는 폐단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翼軍조직을 재개편한 것이다. 이때 새로 개편된 5軍翼道에 소속된 郡縣과 軍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⁹⁾

한편, 東北面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말에 咸興을 비롯하여 甲州와 吉州에 萬戶府가

25) 李基白 前揭論文 p. 211.

26) 「太祖實錄」卷 3 太祖 2年 5月 庚午條.

27) 大司憲南在等 上言……一西北面 國之蕃屏 故於平壤置十翼 安州置十翼 義州置四翼 爲之擇人 每翼置千戶一人 使之鍊士卒 備機械 無事則歸農 有事則出擊 (「太祖實錄」卷 2 太祖 元年 9月 乙亥條).

28) 西北面都巡問使李龜鐵啓 道內事宜 從之 啓曰 煙戶軍丁元數戶首奉足 并五萬四千八百三十七名內 除甲士儒戶鄉站戶船軍外 侍衛四十牌 戶主奉足 并九千二百六十三名 翼軍十四翼 戶首奉足 并二萬三千十二名 (「太宗實錄」卷 14, 太宗 7年 9月 壬子條).

29) 「世宗實錄」卷 24, 世宗 6年 6月 丙辰條.

軍翼道	翼屬別	中·左·右翼 소속 郡縣	軍 額	합 계
平壤道	中 翼	平壤	13,434	30,373
	左 翼	中和·詳原·三登·江東	7,206	
	右 翼	順安·江西·甑山·龍岡·咸從·三和	9,733	
安州道	中 翼	安州·慈山·肅川·永柔	8,245	20,324
	左 翼	成川·殷山·陽德	5,355	
	右 翼	价川·順川·德川·孟山	6,724	
義州道	中 翼	義州·麟山·龍川·定寧·鐵山	5,045	11,814
	左 翼	宣川·隨川·郭山	3,444	
	右 翼	定州·嘉山	3,325	
朔州道	中 翼	朔州·撫山·泰川	3,937	9,443
	左 翼	延山·博川·雲山	3,378	
	右 翼	昌城·碧潼	2,128	
江界道	中 翼	江界·閭延	2,830	5,576
	左 翼	熙川	1,060	
	右 翼	理山	1,686	
총	계		77,530	

설치되고 北靑에는 安北千戶防禦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西北面과 같이 짜임새 있는 翼軍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못했을지라도 고려말까지도 吉州와 甲山을 잇는 선 이남의 지역은 軍目道가 편성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太祖 5년에 刑曹典書 金承禎을 東北面 靑海道安撫兼察理使로 삼았다는³⁰⁾ 기사는 이때에 北靑을 중심으로 靑海道라는 軍目道가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太祖 6년에 鄭道傳이 東北面 都宣撫巡察使로 임명되어 永興道와 吉州道라는 행정 단위를 마련하고 그 官員을 정하였다. 또한, 鄭道傳은 그 지방 守丞을 비롯하여 丞史 이하 知印·使令·百姓·長史·副長史·司史 등의 관속 定員을 정하고, 아울러 各官 소속으로 左右翼의 千戶·百戶·統主를 규정하였는데, 吉州牧은 千戶 1인, 百戶 6인, 統主 12인이며, 端川·鏡城郡·慶源府·靑州郡·甲州 등에는 각기 千戶 1인, 百戶 4인 그리고 統主 8인으로 규정하고 있다.³¹⁾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各官 左右翼 편성의 대상지가 다만 吉州·端川·鏡城·慶源·靑州·甲州 등지에만 한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東北面の 중심지인 咸興·永興 등지가 제

30) 以刑曹典書金承禎爲東北面靑海道安撫兼察理使(「太祖實錄」卷 9, 太祖 5年 正月 己卯條).

31) 東北面都宣撫使鄭道傳分定州府郡縣之名遣從事崔統以聞 安邊以北靑州以南稱永興道 端州以北孔州以南稱吉州道 令東北面都巡問察理使統治之 又置端州以北州府郡縣及各站路官吏 吉州道察理使一 令史十二 兩班子弟知印六 兩班子弟使令百姓二十 吉州牧官使一 令史十二 使令二十五 日守兩班十五 州司長史二 副長史四 五品以下司吏六 兩班徒隸十五 百姓左右翼各千戶一 百戶六 統主十二 端州知事一 令史十 使令二十 日守兩班十 郡司長史二 副長史三 司史二 徒隸十 左右翼各千戶一 百戶四 統主八 鏡城郡知事一 令史六 使令十五 日守兩班八 郡司長史二 副長史二 司史二 徒隸八 左右翼各千戶一 百戶四 統主八 慶源府 使一 令史以下同 (「太祖實錄」卷 7, 太祖 7年 2月 庚辰條).

軍翼道	翼屬別	中·左·右翼 소속 郡縣	軍 額	합 계
咸興道	中 翼	咸興	1,732	2,898
	左 翼	定平·預原	606	
	右 翼	北青	560	
吉州道	中 翼	吉州	819	2,156
	左 翼	端山·甲山	585	
	右 翼	度源·鏡城	752	
和州道	中 翼	和州	902	1,992
	左 翼	安邊·宜川	570	
	右 翼	高原·文川·龍津	520	
총	계		7,046	

의되어 있는 것은 이미 咸興·永興 지방의 左右翼 편성은 이미 그 이전에 편성되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咸興·永興 등지는 고려 공민왕 때 이래 左右翼조직이 편성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고려말에 이미 咸興道·和州道라는 軍目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조선 태조 5년에는 靑海道가 설치되고, 태조 6년에는 吉州道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世宗 7년에는 咸吉道の 전지역이 망라된 軍翼道の 편성이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은 위와 같다.³²⁾

이와 같이, 世宗 7년에 東北面은 咸興道·吉州道·和州道 등 3軍翼道로 정비되고 그 軍翼道の 兵種은 別將 正軍 守城軍 雜色軍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各翼에는 團鍊使 團鍊副使 團鍊判官 등을 守丞으로 겸임케 하였다.

이렇듯, 世宗 6년에는 西北面에서 5軍翼道로 정비된데 이어, 그 익년인 世宗 7년에 東北面은 軍翼道로 정비되어 고려말 이래 兩道の 翼軍조직이 일단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후 平安道の 軍翼道는 世宗 11년에 다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平壤道에서 左翼의 江東이 安州道로 바뀌고, 그 左翼에 右翼의 順安이 소속되고, 安州道에서는 中翼에 中翼의 慈山·肅川·永柔 대신으로 寧邊·博川·順川이 소속되고, 右翼에 孟山이 더 추가되고, 右翼에 价川·順川·德川·孟山 대신으로 肅川·永柔·慈山·江東이 소속되었으며, 義州道에는 변동이 없고, 朔州道에는 中翼에서 撫山이 빠지고, 左翼에서 延山이 빠졌으며, 江界道에서 左翼에 德川이 추가 배정되는 등의 변동이 있었다.³³⁾

32) 「世宗實錄」卷 27, 世宗 7年 2月 庚申條.

33) 吏曹啓 今以平安道延山撫山合爲寧邊大都護府 其翼屬各官 悉宜更定 前此順安縣屬平壤道右翼 寧邊府屬朔州道中翼 博川郡屬朔州道左翼 順川郡屬安州道右翼 肅川府·永柔縣·慈山郡屬安州道中翼 江東縣屬平壤道左翼 价川·德川二郡屬安州道右翼 今改平壤道中翼 平壤府左翼 中和·祥原·三登·順安 右翼 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 安州道中翼 寧邊府·博川·安州·順川 左翼 殷山·成川·陽德·孟山 右翼 肅川·永柔·慈山·江東 義州道中翼 義州·定

한편, 世宗 7년에 3軍翼道로 편성된 東北面은 世宗 16년부터 동왕 31년까지에 6鎮이 개척되면서 6鎮에도 翼軍이 편성되어 갔다. 즉, 世宗 20년에 慶源·會寧·慶興 등지에 千戶·百戶등을 대폭 증설하였는데 다음과 같다.³⁴⁾

慶源府 千戶元額 4인, 今加 4인, 百戶 10인, 今加 6인

會寧 又設 千戶 7인, 百戶 12인

鍾城 設 千戶 4인, 百戶 9인

慶興 設 千戶 3인, 百戶 6인

그리고, 世宗 21년에 咸吉道에서 신설된 富居縣의 경우에는 千戶 1인과 百戶 2인을 두게 하였고³⁵⁾, 世宗 28년에 신설된 三水郡은 咸興道の 右翼에 편성하기도 하였다.³⁶⁾

그리하여, 世宗實錄 地理志에 보이는 平安道와 咸吉道の 軍翼道 中·左·右翼 소속의 군현과 軍額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平安道の 軍翼道 편성

軍翼道	翼屬別	中·左·右翼 소속 郡縣과 翼軍	翼軍數	합 계
平壤道	中 翼	平壤(2,951)	2,951	5,670
	左 翼	中和(478) 祥原(303) 三登(119) 順安(413) 甑山(151)	1,464	
	右 翼	咸從(271) 三和(237) 江西(333) 龍岡(414)	1,255	
寧邊道	中 翼	安州(477) 順川(307) 寧邊(532) 博川(148)	1,464	3,440
	左 翼	成川(392) 孟山(106) 殷山(145) 陽德(191)	834	
	右 翼	江東(342) 肅川(275) 慈山(163) 永柔(362)	1,142	
義州道	中 翼	義州(336) 麟山(43) 龍川(85) 鐵山(96) 定寧(136)	696	1,841
	左 翼	定州(402) 郭山(137) 隨川(205) 宣川(214)	958	
	右 翼	嘉山(187)	187	
朔州道	中 翼	朔州(203) 泰川(141)	344	1,535
	左 翼	价川(535) 昌城(160) 雲山(146)	841	
	右 翼	碧潼(350)	350	
江界道	中 翼	江界(436) 閔延(151) 慈城(283) 茂昌(127) 虞芮(77)	1,074	2,810
	左 翼	德川(437) 熙川(232)	669	
	右 翼	理山(492) 渭原(575)	1,067	
총 계				15,296

寧·麟山·龍川·鐵山 左翼 宣川·郭山·隨川 右翼 定州 嘉山 朔州道 中翼 朔州·泰川 左翼 雲山·价川 右翼 昌城·碧潼 江界道 中翼 江界府·閔延 左翼 熙川·德川 右翼 理山 命依所啓(「世宗實錄」卷 43, 世宗 11年 2月 辛巳條).

34) 「世宗實錄」卷 81, 世宗 20年 6月 辛巳條.

35) 「世宗實錄」卷 86, 世宗 21年 7月 戊午條.

36) 「世宗實錄」卷 111, 世宗 28年 5月 戊辰條.

咸吉道の 軍翼道 편성

軍翼道	翼屬別	中·左·右翼 소속 郡縣과 翼軍	翼軍數	합 계
咸興道	中 翼	咸興(660)	660	1,580
	左 翼	定平(298) 預原(71)	369	
	右 翼	北青(509) 三水(42)	551	
永興道	中 翼	永興(640)	640	1,250
	左 翼	安邊(259) 宜川(70)	329	
	右 翼	高原(176) 文川(74) 龍津(31)	281	
吉州道	中 翼	吉州(507)	507	1,684
	左 翼	端川(320) 甲山(257) 鏡城(299)	876	
	右 翼	慶源(301)	301	
慶源道	中 翼	慶源(甲士 133 正軍 629) 富寧(翼屬甲士 262 正軍)	1,024	3,503
	左 翼	穩城(甲士 25 正軍 686) 慶興(正軍 312)	1,023	
	右 翼	會寧(甲士 25 正軍 695) 鍾城(甲士 12 正軍 724)	1,456	
총	계			8,017

이와 같이, 世宗實錄 地理志에는 平安·咸吉 兩道の 軍翼道체제가 재정비되어 兩道の 전지역이 총망라되어 있음을 본다. 세종 6년에 平安道 軍翼道체제가 정비되고, 세종 7년에는 咸吉道 軍翼道체제가 정비되어, 이것이 世宗實錄 地理志에 재정비된 것인데 편제상에 兩도에 다소의 개정된 바가 있다. 平安道の 경우, 세종 6년의 軍翼道 편제를 다소 수정한 세종 11년의 것과 世宗實錄 地理志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安州道가 寧邊道로 바뀐 것을 비롯하여 平壤道에서 右翼의 甌山이 左翼으로 바뀌고, 義州道에는 右翼의 定州가 左翼으로 바뀌고, 朔州道에는 右翼의 博川대신으로 价川과 昌城이 들어가고, 江界道에서는 中翼에 慈城·茂昌·虞芮 등이 추가 배정되고 있으며, 右翼에 渭原이 추가되는 등의 변동을 볼 수 있다. 한편, 咸吉道の 경우, 세종 7년의 咸興道·吉州道·和州道 등 3軍翼道에서 6鎭의 개척에 따라 慶源道가 다시 추가되어 4軍翼道가 되고, 종래의 和州道가 永興道로 改名되어 있다. 그리고, 三水の 개발에 따라 三水는 咸興道 右翼에 추가 배치되고, 吉州道の 右翼에 소속되던 鏡城이 吉州道 左翼으로 배정되고 있다.

翼軍과 軍翼道와의 관계는 翼軍을 主兵種으로 삼는 軍事단위 지역이 軍翼道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世宗 6년에 平安道の 5軍翼道 軍人의 수는 「水陸軍戶子枝并」 77,530명인데 비하여 世宗實錄 地理志 平安道 翼軍의 수는 15,296명이며, 世宗 7년에 咸吉道 3軍翼道の 翼軍의 수는 別牌·守城軍·雜色軍을 합한 수로서 7,046명인데 비하여 世宗實錄 地理志에는 새로 慶源道가 첨가되어 4軍翼道の 軍人의 수가 8,017명이며, 慶源道를 제외한 3軍翼道の 翼軍의 수는

4,514명이다. 그러므로, 世宗 6년, 7년의 軍翼道 軍人の 수에 비하여 世宗實錄 地理志의 翼軍의 수는 크게 감소되어 있다. 그리고, 世宗實錄 地理志에서 平安·咸吉兩道の 兵種別 軍人の 수를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道 別	兵 種		甲 士	船 軍	守城軍	侍衛軍	烟臺軍	翼 軍	正 軍	계	翼軍비율
	甲 士	船 軍									
平 安 道	—	3,488	881	3,010	—	15,296	—	22,675	67.5%		
咸 吉 道	214	1,059	562	—	6	4,776	3,046	9,963	75.1%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平安·咸吉 兩道の 여러 兵種 중, 翼屬軍이 평안도에서는 全軍額의 67.5%이고, 咸吉에서는 全軍額의 75.1%를 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北方 兩道에서는 翼屬軍이 主軸을 이루는 兵種임을 쉬 알 수 있으며, 翼軍과 軍翼道와의 관계는 翼軍이 주요 兵種임과 동시에 兩道の 모든 府·牧·郡·縣이 軍翼道에 소속되어 있고, 그 관할하의 각 병종은 軍翼道 체제 속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軍翼道는 行政과 軍事가 一元化되어 있으며, 兩道の 모든 守令은 각 軍翼道 아래 軍事職을 겸임하였다. 守令은 그 品秩에 따라, 2品은 某翼兵馬節度使, 3品은 某翼兵馬團鍊使, 4品은 某翼兵馬團鍊副使, 5品은 某翼兵馬團鍊判官 등 翼軍의 軍事職을 겸직하였다.³⁷⁾ 그러므로, 翼軍을 主力부대로 삼고 있는 軍翼道の 守令은 그 軍翼道 소속의 모든 兵種을 함께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兩道の 守令은 軍事단위인 軍翼道の 지휘관을 겸임하여 6道 沿邊의 守令과 함께 반드시 武才가 있는 자로서 差任되었다. 전국의 府·牧·郡·縣은 軍事的으로 보아 上緊 中緊 下緊으로 구분하고, 上緊郡縣은 武科 및 武才錄에 오른 자; 中緊郡縣은 비록 武才錄에 오르지 못했으나 吏才와 智略을 겸비한 자를 가려 差任케 하였는데, 北方 兩道에는 南方 6道와는 달리 下緊郡縣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上緊군현으로 규정되어 있다.³⁸⁾ 北方 兩道の 守令은 治政만이 아니라 治軍하는 점에서 南方道の 守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7) 「世宗實錄」 地理志.

38) 「世宗實錄」 卷 117, 世宗 29年 9月 癸巳條.

39) 「太宗實錄」 卷 7, 太宗 4年 4月 乙未條의 田結數 및 戶口를 doorway 하하면 다음과 같다.

道	田 結 數	戶	口	1戶當 結數
京 畿 道	* 149,300	—	—	—
忠 清 道	223,090	19,561	44,476	11.4
全 羅 道	173,990	15,703	39,151	11.0
慶 尙 道	224,625	48,992	98,915	4.6
豐 海 道	90,922	14,170	25,879	6.4
江 原 道	59,989	15,879	29,238	3.8
東 北 面	3,271	11,311	28,693	0.3
西 北 面	6,648	27,788	52,872	0.2
計	782,535	153,404	322,786	5.1

※ 「太宗實錄」 卷 3, 太宗 2年 2月 戊午條 引用.

고려말에 北方 兩道에 翼軍이 설치된 이래, 이처럼 世宗 때에야 兩道の 軍翼道체제가 정비된 것은 世宗때에 이르러서야 중앙정부가 兩道지방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太宗 4년에 의정부가 各道の 田畝 및 戶口의 수를 보고한 것을 보면, 平安·咸吉 兩道の 戶口가 비로소 파악되어 있으나 그 지역의 田結에 대하여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³⁹⁾ 太宗 4년에 兩道の 戶口 파악이 이루어진 이후 兩道の 量田은 太宗 11년에 착수되어⁴⁰⁾, 太宗 13년에 이루어졌다.⁴¹⁾ 兩道가 이처럼 量田이 늦은 것은 北方이 국경지대이며 아직 그 지방의 土豪에게 中央集權의 行政力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兩道는 太宗 13년에 量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南方 諸道の 結負制와는 달리 1日耕에 7斗를 納租하였으나, 太宗대에 量田이 이루어지면서 1結당 20斗의 納租를 규정하고 있으니⁴²⁾ 타도의 30斗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인 量田은 太宗대에 이어 世宗 10년부터 새로운 量田尺에 의하여 시작되었거니와, 世宗 19년에 咸吉道の 田結이 139,000여 結로 기록되고 있어⁴³⁾, 이 結數는 世宗實錄 地理志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結數이므로 이때까지에 咸吉道는 물론 平安道の 量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兩道の 土地 結數를 太宗 4년의 통계와 世宗實錄 地理志의 통계에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道	年 代	太宗 6년	世宗實錄 地理志	차 액
平 安 道		3,271	311,770	308,499
咸 吉 道 (6鎭·三水)		6,648	130,406 (21,082)	123,758

太宗 4년의 兩道 土地 結數에 비하여 世宗實錄 地理志에 보이는 兩道の 結數 增加는 바로 太宗初까지도 兩道에 미치지 못했던 中央集權의 行政力이 世宗때에 이르러 兩道에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중앙정부는 兩道에 대하여 태종초에 人口를 파악하게 되고, 世宗대에 이르러 人口와 함께 土地까지도 파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건국초 이래 兩道の 翼軍조직은 중앙정부가 人口와 土地를 완전히 파악하게 된 世宗대에 軍翼道체제를 정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II. 軍翼道の 구조와 社會구조

1. 軍翼道の 구조

平安·咸吉 兩道の 軍翼道체제는 도내의 모든 郡縣이 망라되어 있어 郡縣의 領屬관계와 不

40) 「太宗實錄」卷 22, 太宗 11年 12月 丁酉條.

41) 「太宗實錄」卷 25, 太宗 13年 正月 丁亥條.

42) 「太宗實錄」卷 26, 太宗 13年 11月 壬寅條.

43) 「世宗實錄」卷 78, 世宗 19年 8月 己未條.

可分の 관계가 있거니와, 원래 郡縣의 領屬관계는 界首官의 제도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고려 전기에 중앙정부는 직접 州縣과 직결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外官이 있는 州縣만은 직접 牒報하는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앙에서 많은 外官을 파견하여 州縣을 일률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실제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主牧制를 활용하였다. 즉, 중앙에서 外官이 파견된 京·都讓府·牧 등으로 하여금 다른 郡縣 등을 領屬케 하고, 그 主牧으로 하여금 上表陳賀와 鄉貢의 選上 그리고 外官의 推獄 등 여러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⁴⁴⁾ 그러나, 고려 전기의 主牧——界首官 체제는 仁宗代 이후 道——按察使 체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고려 후기의 按察使 道制는 완전히 중앙과 州縣 사이의 行政구획으로 화하였던 것이다.

고려 전기에 南道에서는 중앙정부가 州縣에 직접 牒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정한 기능에 있어서는 主牧의 界首官을 中間기구로 활용한데 대하여 兩界에서는 主牧制를 이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兵馬使로 하여금 一元的으로 파악하게 하였다. 兩界 중 西北面에는 安北都讓府, 東北面에는 安邊都讓府 등 主牧이 있었다. 그러나, 兩界에서는 主牧이나 領郡의 上下 관계가 아니라 함께 兵馬使의 통제를 받았다. 南道에서는 各道에 몇 개의 主牧이 있고, 그 한 主牧 밑에 3, 4개의 領郡이 속해 있는데 비하여 兩界에서는 각각 한 主牧이 있고, 그 밑에 3, 4개나 되는 領郡이 달려 있었으니 그것은 兩界의 단일적인 主牧체제로서 一元的인 兵馬使制를 성립케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兩界의 命令체제가 中央政府——兵馬使——州鎮이라 하지만 兵馬使와 主鎮 사이에 또하나의 중간적인 기구로서 南道와는 달리 租稅 등 民事를 담당한 監倉使와 軍事를 맡는 分道將軍 그리고 감찰기관인 分臺 등의 分道制가 특설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兩界에 監倉使가 파견되는 分道로서 西北界에 雲中道·興化道, 東北界에 溟州道·朔方道·沿海道 등의 기록이 남아 있으며, 또한 分道將軍이 파견되는 分道로서는 西北界에 義州·靜州·昌州·朔州·延州·宣州 등과 東北界에 定州 등이 分道 명칭으로 기록에 남아 있다. 그리고, 監倉使와 分道將軍이 각 界內에 나누어 두어진 데 대하여 分臺는 各界 兵馬使기구에 직속되어 있는 관원이었다.⁴⁵⁾

이러한 兩界의 支配조직도 몽고의 침입을 받아 변동을 가져 왔다. 종래의 兵馬使 기구도 해체됨과 아울러 分道制도 없어졌다. 그리하여,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뒤, 공민왕 20년에 兩界에 배치된 都巡問使는 民事와 軍事 등 모든 것을 관장하는 行政長官이 되어 州郡을 통할하고 守令의 賢否를 黜陟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므로, 兩界의 都巡問使는 南道の 按廉使에 비하여 行政 이외에 軍事까지도 관장하는 行政長官이 된 것이다. 공양왕 원년에 兩界의 都巡問使

44) 邊太燮 「高麗政治制度史研究」—潮閣, 1971, p. 145.

45) 邊太燮 「上揭書」 pp. 219~225.

는 都節制使로 개정되고, 이어 공양왕 2년에는 兵馬都節制使로서 都觀察黜陟使를 겸하게 되어 고려말에는 兩界에도 南道와 같이 民政장관인 都觀察黜陟使가 파견됨으로써 單一的인 行政기구로 통일된 것이다.⁴⁶⁾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 후기에는 특수 행정 지역인 兩界制에 큰 변화가 진행되어 兩界의 支配조직은 점차 南道化되어 갔다. 즉, 군사적인 防禦州鎮이 일반 行政 기구인 州縣으로 개편되고, 北界의 남쪽 지방이 먼저 按廉使道로 轉化되더니 마침내는 兩界에도 5道와 같이 都觀察黜陟使가 설치되어 고려는 필경 전국을 單一的인 行政조직으로 편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말까지에 兩界의 南道化가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

道	界首官	品 府牧郡縣	從 2 品		正 3 品		從 3 品	從 4 品	從 5 · 6 品	계
			府	牧	大都護府	都護府	郡	縣		
平 安 道	平壤府	平 壤					中 和 祥 原	三登·江東 順安·甑山 咸從·三和 江西·龍岡	11	
	安州牧	安 州			成 肅 川	慈山·順川 价川·德川	永柔·孟山 殷山·陽德	11		
	義州牧	義 州				麟山·龍川 鐵山·郭山 隨川·宣川 嘉山	定寧	10		
	朔州都 護 府			寧 邊	朔 州	昌城·碧潼 雲山·博川 泰川		7		
	江界都 護 府				江 界	理山·熙川 閭延·慈城 茂昌·虞茂 渭原		8		
咸 吉 道	咸興府	咸 興				定平·北青		3		
	永興都 護 府			永 興		高原·文川 預原		4		
	安邊都護府				安 邊	宜 川	龍 津	3		
	吉州牧	吉 州			慶 源	端川·甲山 鏡城		5		
	※直 領				慶源·會寧 鍾城·穩城 慶興·富寧	三 水		6		
계		2	4	2	13	33	14	68		

46) 邊太燮 「上揭書」, pp. 226~237.

에도 平安·咸吉道の 南道化 시책이 경주되었거니와 조선건국 후 1세기 동안은 兩道の 南道化과정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 南道化 시책 중의 하나로 兩道에서 南道の 界首官 계도를 도입한 것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도 平安·咸吉道の 지방지배조직에 있어서 軍翼道체제나 土官制 등은 南道와는 다른 대표적인 제도이었다. 그리고, 軍翼道체제와 土官制는 고려시대의 中央政府—兵馬使—州鎭 체제하의 分道制를 계승하면서도 그 형식은 南道の 界首官계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世宗實錄 地理志에서 平安·咸吉道の 界首官제도에 의한 郡縣의 領屬관계와 軍翼道체제의 관계를 비교하여 보기 위하여 차례로 兩道の 界首官계도를 도표화하면 위와 같다.

위 界首官계도를 軍翼道와 비교해 보면, 平安道는 平壤府·安州牧·義州牧·朔州都讓府·江界都讓府 등 5界首官과 平壤道·安州道·義州道·朔州道·江界道 등 5軍翼道가 동일한 조직이며, 다만 寧邊·博川·价川·德川 등 郡縣이 界首官과 軍翼道の 소속이 다를 따름이다. 그리고, 咸吉道는 咸興道·永興道·吉州道·慶源道 등 4軍翼道인데 界首官은 咸興府·永興都讓府·安邊都讓府·吉州牧과 直領으로 편성되어 있어, 界首官에서는 永興道를 永興都讓府와 安邊都讓府로 兩分하여 永興道 중에서 安邊·宜川·龍津만으로 한 界首官 조직을 삼았으며, 6鎭인 慶源道와 三水를 直領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平安·咸吉道の 界首官과 軍翼道는 不可分の 관계를 가진 行政조직 내지 軍事조직이었던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平安·咸吉道の 守令은 翼軍의 軍事指揮官을 겸직하여 그 守令의 品에 따라 2品은 某軍翼道 某翼 兵馬節制使, 3品은 兵馬團鍊使, 4品은 兵馬團鍊副使, 5品은 兵馬團鍊判官을 兼帶하였다. 그러므로, 平安道の 守令 47인 중 兵馬節度使 2인, 兵馬團鍊使 8인, 兵馬團鍊副使 25인, 兵馬團鍊判官 13인이며, 咸吉道는 守令 21인 중, 兵馬節制使 1인, 兵馬團鍊使 11인, 兵馬團鍊副使 8인, 兵馬團鍊判官 1인이 두어졌다. 그리고, 會寧·鍾城·穩城·慶興·富寧 등은 각각 都護府使가 慶源道 某翼 兵馬團鍊使를 겸하면서 鎭의 節制使를 겸직하였다.

이와 같은 平安·咸吉道の 行政·軍事 조직에 비하여 南方 6道の 行政조직과 營鎭의 군사조직을 世宗實錄 地理志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南方 6道에도 兵馬都節制使와 兵馬僉節制使가 배치되어 있으나 營鎭軍이 배치되어 있는 소재지로 보아, 各道마다 군사조직이 道の 전역을 망라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營鎭軍을 통솔하는 兵馬都節制使 및 兵馬僉節制使와 守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平安·咸吉道の 軍翼道는 각각 舉道的으로 망라되어 있으며, 모든 守令이 各翼의 軍事指揮官을 겸직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平安·咸吉道の 翼軍과 南方 6道の 營鎭軍은 서로 對比되는 兵種이면서도 北方과 南方, 두 지역의 군사 조직은 판이하게 달랐다. 그리하여, 平安·咸吉道の 軍翼道는 다분히 고려시대의 兩界 州鎭軍 체제를 계승하고 兩界의 分道制를 활용하면서도 그 형식은 南方의 界首官 계도를 도입하고 있다 할 것이다.

南方 6道の 界首官 및 營鎮의 배치

道	界首官	營鎮의 官	所在地	留防軍數
京畿道	廣州牧 楊州都護府 水原都護府 鐵原都護府 富平都護府			
忠清道	忠州牧 清州牧 公州牧 洪州牧	兵馬都節制使 兵馬僉節制使 兵馬僉節制使	海美縣 蓴城鎮 藍浦鎮	855 469 453
慶尙道	慶州府 安東大都護府 尙州牧 晉州牧	兵馬都節制使 兵馬僉節制使 兵馬僉節制使 兵馬僉節制使 兵馬僉節制使 兵馬僉節制使	昌原 蔚山鎮 迎日鎮 東萊鎮 寧海鎮 泗川鎮	938 439 381 380 380 349
全羅道	全州府 羅州牧 南原都護府 長興都護府 濟州牧	兵馬都節制使 兵馬僉節制使 兵馬僉節制使 兵馬僉節制使 兵馬僉節制使	康津縣 沃溝鎮 扶安鎮 茂長鎮 兆陽鎮	853 300 300 300 300
黃海道	黃州牧 海州牧 延安都護府 豐川郡	兵馬都節制使 兵馬僉節制使 兵馬僉節制使 兵馬僉節制使 兵馬僉節制使	海州 豐川鎮 長淵鎮 瓮津鎮 康翎鎮	440 428 502 540
江原道	江陵大都護府 原州牧 淮陽都護府 三陟都護府 春川都護府 杆城郡	兵馬都節制使 兵馬僉節制使 兵馬僉節制使	江陵 三陟鎮 杆城鎮	留防軍이 없고, 有事時에는 侍 衛牌로 應當

원래, 고려시대의 界首官 제도는 南道에만 시행되고 兩界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 건국 초 太祖 2년에 各道 界首官을 정하였는데 慶尙道·全羅道·楊廣道·交州江陵道·西海道·京畿左右道에만 배치되어 있고 平安·咸吉道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⁴⁷⁾ 그러나, 太宗 13년 10월에 各道 各官의 이름을 고칠 때 西北面은 平安道로 삼고, 東北面은 永吉道로 삼으며, 平壤

47) 定各道界首官 慶尙道鷄林安東尙州晉州金海京山 全羅道完山羅州光州 楊廣道廣州忠州清州公州水原 交州江陵道原州 淮陽春川江陵三陟 西海道黃州海州 京畿左道漢陽鐵原 右道延平富平(「太祖實錄」卷 4, 太祖 2年 11月 壬子條).

安州 永興 吉州을 界首官으로 삼았다.⁴⁸⁾ 그리고, 世宗實錄 地理志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平安道에 5界首官, 咸吉道에 4界首官과 直領으로 정비하였던 것이다.

고려 전기의 界首官은 上表陳賀, 鄉貢選上 그리고 外官推獄 등의 기능을 가졌다 하였거니와, 조선 초기의 界首官도 遺痕으로만 남아 있는 제도가 아니라 界首官에 의한 郡縣의 領屬 관계가 계승되고 있었다. 조선 초기 界首官의 기능은 모두 알 수 없는 바이지만, 아직도 界首官이라는 中間기구로서의 기능이 활용되고 있었다. 조선 초기에 界首官 단위로 戶口의 파악⁴⁹⁾, 醫院의 설치⁵⁰⁾, 禪敎寺院의 存置⁵¹⁾, 爐冶의 배치⁵²⁾, 禮賓寺用的 養猪⁵²⁾ 그리고 進上物膳의 點檢⁵⁴⁾ 등 여러 기능을 맡고 있었다. 또한, 太宗 초에 政丞 成石璘 등의 上啓에 의하면, 各道의 界首官은 軍事와 民事를 兼全한 자로서 삼아 有事時에는 각각 領內의 兵卒을 거느리고 곧 防禦에 直到하게 되어 있어, 軍事面에도 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⁵⁵⁾

한편, 平安·咸吉道の 軍翼道는 土官制와도 不可分의 관계가 있었다. 먼저, 平安·咸吉道の 軍翼道와 土官이 설치된 곳을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道	軍 翼 道	土官이 배치된 고을	道	軍 翼 道	土官이 배치된 고을
平 安 道	平 壤 道	平 壤	咸 吉 道	咸 興 道	咸 興
	寧 邊 道	寧 邊		永 興 道	永 興
	義 州 道	義 州		吉 州 道	吉 州
	朔 州 道	朔 州		慶 源 道	鏡 城
	江 界 道	江 界			6鎮 (慶源·會寧·富寧· 鍾城·穩城·慶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平安道는 5軍翼道와 土官이 설치된 곳 5개처가 일치되어 있고, 咸吉道에서는 咸興·永興·吉州는 軍翼道와 土官의 설치가 일치되어 있으며, 다만 土官이 설치되어 있는 鏡城과 6鎮을 軍翼道에서는 통괄하여 慶源道로 한데 묶어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요컨대, 北方 兩道의 軍翼道는 土官이 설치된 곳과 일치되나 6鎮지역만 土官이 각각 설치되어 있어, 이 지역은 界首官 제도에서도 直領으로 되어 있는 것과 상통되는 바이거니와, 고려말 이래 새로 設鎮된 邊方 요새지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土官制는 고려초의 鄉職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며, 고려말에 元의 직속 領地이다가 수복된

48) 改各道各官之號……以西北面爲平安道 東北面爲永安道 以平壤安州永興吉州皆界首官也(「太宗實錄」卷 13, 太宗 13年 10月 辛酉條).

49) 「太宗實錄」卷 8, 太宗 4年 9月 丁巳條.

50) 「太祖實錄」卷 3, 太祖 2年 2月 乙亥條.

51) 「太宗實錄」卷 11, 太宗 6年 4月 丁巳條.

52) 「太宗實錄」卷 3, 太宗 2年 正月 甲申條.

53) 「世宗實錄」卷 82, 世宗 20年 7月 癸卯條.

54) 「世宗實錄」卷 122, 世宗 30年 10月 辛酉條.

55) 御便殿 政丞成石璘·李茂啓 各道界首官 宜以軍民兩事兼全者爲之 有事則各率領內兵卒 直到防禦 仍書可用人姓名以進(「太宗實錄」卷 14, 太宗 7年 8月 丁巳條).

지역에서 비롯되었다. 즉, 土官制는 元의 직속 領地로서 東寧府·雙城總管府·耽羅總管府 등이 설치되었던 平壤·和州·濟州에서 비롯되었다. 土官制는 平壤에서 공민왕 3년 이전에, 和州는 공민왕 18년에, 그리고 濟州는 조선 태조 3년 이전에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건국 초에 平壤 和州 濟州에만 설치되어 있던 土官은 世宗 때에 寧邊·義州·江界·鏡城 및 6鎮 등에도 설치되었다.

土官은 그 지방의 군사적·사회적 有力層으로 鄉吏가 맡는 일에 비유되는 役이나 軍事指揮官의 役에 총용되었다. 이것은 平安·咸吉道の 효율적 地方支配와 군사적 防禦조직의 강화 등 邊鎮의 충실을 기하고 밖으로 野人과의 연결을 방지하고자 한 회유정책이었으며, 그 관직은 중앙관직과는 격리된 범위 내에서의 특수관직이었다.⁵⁶⁾ 土官을 東班과 西班으로 나누어 東班은 지방행정의 실무를, 西班 衛領職은 군사에 관한 임무를 맡게 하고, 土官에게 品階를 주어 지역적 신분질서를 보장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在地의 사회조직을 군사조직으로 편제한 翼軍은 在地의 支配기구를 行政기구화한 土官制와 不可分의 관계를 갖는 것이었다.

2. 軍翼道와 社會구조

平安·咸吉道の 翼軍을 주력으로 한 軍翼道는 在地 社會支配구조를 그대로 편제한 軍事조직이었다. 軍翼道の 各翼에는 각 守令이 軍事지휘관을 겸임하였지만, 그 군사조직은 실제 鎮撫·千戶·百戶·摠牌·小牌·頭目·統主 등 여러 在地有力者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대체로 千戶·百戶·統主체제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在地 有力者를 軍事조직화한 千戶는 平安道の 경우, 太祖 2년에 大司憲 南在 등의 上言에서,

西北面 國之藩屏……每翼置千戶一人 使之鍊士卒 備器機 無事則歸農 有事則出擊 近來爲千戶者 率不擇人 例皆貪汚 不思職事 侵逼軍士 役使如奴隸 廣置農場 有女者 勒令爲妾 恣行一己之欲……⁵⁷⁾

이라 하여, 軍士를 핍박하여 노예와 같이 役使케 하고 넓은 농장을 두고 여자를 강제로 妾으로 삼는 폐단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有力者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太宗 7년에 平壤府尹 尹穆의 便宜事目 중에,

一西北一方 以團鍊使 代爲千戶 又爲副千戶 爲十(千:筆者)戶者 撫軍驍勇 世居其方 民之情僞 軍之壯弱 備詳知之 是以將卒相保 素無苟且之風 願自今令千戶之後 世襲其職 繼述祖父之事……(政府議得 依今受判行移)⁵⁸⁾

라 하여, 千戶가 된 자는 군대를 통솔하는 驍勇한 사람으로, 그 고장에 世居하여 民情과 軍事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千戶의 직임을 世襲케 하도록 하고 있다.

56) 拙稿「上揭論文」.

57) 「太祖實錄」卷 2, 太祖 元年 9月 己亥條.

58) 「太宗實錄」卷 14, 太宗 7年 10月 己丑條.

한편, 咸吉道도 平安道와 같이 고장의 土豪들이 百姓을 私占하여 노예와 같이 부리며 父子가 世襲적으로 그 권세를 행사하였다.⁵⁹⁾ 咸吉道の 社會支配구조의 모습은 邊境의 向化人에 대한 처우에서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에 咸吉道에는 많은 向化人이 있었거니와, 이 向化人에게는 伊彦千戶 伊彦百戶 등의 관직을 주어 회유하였다. 向化人에게 관직이 주어지는 기준은 각 向化酋長의 개인적인 역량과 왕조에 대한 忠誠度 그리고 자기 管下部隊의 制禦능력 등을 감안하였으므로 酋長의 관록이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었다.⁶⁰⁾ 그러므로, 向化酋長은 向化한 이후에도 舊體制를 지속하였고, 그 管下에서 使役을 담당하던 百姓은 酋長이 노예와 같이 부리는 苦役을 감당치 못할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太宗 13년 8월에 東北面 千戶의 私設管下民戶를 혁파하는데, 그 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罷東北面千戶等私設管下民戶 政府啓 東北面來接向化千戶金高時帖木兒管下李求大 崔也吾管下金良龍等 七人告曰 昔在元朝 各以毛物鷹子 貢于帝所 今者蒸義來居 千戶等役之如奴隸 不堪其苦 願依他軍例役之⁶¹⁾

즉, 東北面 向化土豪들의 私設 管下民戶를 혁파하는 사유로서 向化人 千戶 金高時 帖木兒의 管下 李求大와 崔世吾의 管下 金良龍 등이 來訴한 것을 정부에서 上啓한 것인데, 그들의 주장은 元朝治下에서는 약간의 毛物과 鷹子の 貢物만을 바치는데 불과하였으나 지금 千戶의 管下에서는 노예와 같이 役使되어 그 괴로움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일반 軍役의 예와 같이 조처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管下百姓의 訴願에 따라 東北面 管下民戶를 혁파한 것이나 그들의 전통적인 管下民戶의 구성을 일시에 모두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이견은,

臣等以爲 此人等 歸化有年 不可不從其願 宜將上頃千戶及其他千戶孫 二品以上 給奉足十名 四品以上五名 六品以上四名 百姓正軍 則給二名 以爲式 (從之)⁶²⁾

이라 하여, 向化 千戶의 私設 管下民戶 제도를 혁파하면서 최고 10명 이내의 奉足으로 한정할 것을 立法化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東北面の 私設 管下民戶는 철저하게 혁파된 것은 아니었다. 世宗 14년에 李之蘭의 아들 和英은 公定된 奉足 30戶 이외에 隱占戶가 123戶나 되었다.⁶³⁾ 그리고, 世宗 12년에 右代言 金宗瑞의 上啓에 의하면, 吉州 지방에서 民戶의 挾丁 상황은, 많으면 4·50丁 적어도 2·30丁이나 된다고 하였다.⁶⁴⁾ 이와 같이, 兩道에서는 有力한 民戶들이 最잔한 民戶를 隱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平安·咸吉道와 같은 在地 社會支配구조는 濟州에서도 볼 수 있다. 조선 초기에 濟州에는 舊

59) 「太宗實錄」卷 26, 太宗 13年 8月 壬子條.

60) 金奎聲「伊彦攷」(「史學研究」第18號, 1964) p. 180.

61) 「太宗實錄」卷 26, 太宗 13年 8月 壬子條.

62) 同上條.

63) 兵曹啓 卒判府事李和英依式奉足三十戶外 隱占一百二十三戶 (「世宗實錄」卷 56, 世宗 14年 6月 甲寅條).

64) 右代言金宗瑞啓 都摠制盧開言 吉州都節制使河敬復與我言曰 吉州民戶挾丁 多至四·五十 少不下二三下 (「世宗實錄」卷 50, 世宗 12年 12月 丁丑條).

耽羅의 王族인 星主와 王子가 최고의 관직인 都州官左·右都知管이고, 그 아래에 千戶所가 있으며, 다시 그 아래에 都千戶·上千戶·副千戶로 조직되어 있다.⁶⁵⁾ 즉, 耽羅國 아래의 星主·王子制를 근간으로 하여 千戶조직으로 支配구조를 再現시킨 濟州의 土官制는 濟州내의 私的 權力구조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동시에 그 사회질서체계를 이루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⁶⁶⁾

이와 같이, 濟州의 사회구조가 그러하듯이 北方 兩道에서도 조선 초기에는 국가적 民戶지배보다도 私的 民戶지배가 보다 일반적인 형태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私的 民戶지배체제를 그대로 수용하여 군사조직에 활용된 것이 翼軍조직이며 그 뒤에 行政·軍事조직인 土官制에 의하여 지방지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이다.

翼軍조직은 千戶·百戶·統主에 의하여 관장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太祖 7년에 東北面 都宣撫使 鄭道傳은 端川 이북의 地方行政단위와 그 官吏를 정하고 左·右翼의 千戶·百戶·統主의 定員을 마련하였는데, 대체로 千戶 1인에 百戶 4인이 소속되고, 百戶 1인에 統主 2인이 소속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太宗 13년에 東北面 各翼의 千戶·百戶의 수를 정하였는데, 上千戶는 1인으로 5品, 副千戶도 1인으로 6品, 每 1領마다 上百戶는 1인으로 7品, 副百戶도 1인인데 8品으로 규정하였다.⁶⁷⁾ 千戶와 百戶는 각각 上·副의 구분이 있어 위로 5品으로부터 아래로 8品에 이르기까지 品階를 받는 翼軍의 지휘관이었다.

千戶와 百戶가 管領하는 人員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千戶는 100戶, 百戶는 50戶를 통솔한 것으로 생각된다. 世宗 19년에 咸吉道의 新設된 4鎭에서 每 10戶에 1統主, 每 50戶에 1頭目 그리고 每 100戶에 1摠牌를 두도록 조치하고 있다.⁶⁸⁾ 그리고, 世祖 때에 平安道에서는 每 25명에 小牌 1인, 50명에 百戶 1인, 100에 千戶 1인을 배치하기로 조치하고 있다.⁶⁹⁾ 이와 같이, 千戶·百戶·統主가 통솔하는 인원이 世宗 때에는 統主가 10戶, 百戶가 50戶, 千戶가 100戶이었던 것이 世祖 때에 統主는 25명, 百戶는 50명, 千戶는 100명으로 개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世祖 때에 保法으로의 개편에 따라 종래의 戶 단위에서 丁단위로 軍役 편성의 기저가 바뀌면서 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軍翼道 소속의 主力 군인은 翼軍이었거니와 그 軍戶는 농민으로 편성한 것이라 생각된다. 고려말에 西北面 翼軍 소속의 군인은 白丁軍 혹은 農民軍을 망라하여 軍籍에 올리었다. 조선 초기에도 北方 兩道에는 원래 노비가 없고, 그 지방의 軍人에도 노비가 없으며 管下百姓도 良民

65) 改濟州土官號 以東道千戶所爲東道靜海鎭 西道千戶所爲西道靜海鎭 千戶爲都司守 上千戶爲上司守 副千戶爲副司守道之官爲都州官 以星主爲都州官左都知管 王子爲都州官右都知管 (『太宗實錄』 卷 4, 太宗 4年 5月 辛卯條).

66) 吉田光男 「十五世紀朝鮮의 土官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8, 東京, 1981).

67) 定東北面各翼千戶百戶之數 上千戶一 五品 副千戶一 六品 每一領 上百戶一 七品 副百戶一 八品 (『太宗實錄』 卷 26, 太宗 13年 7月 戊戌條).

68) 議政府據兵曹呈啓 咸吉道新設四邑與胡虜雜處禁防之法 不可不嚴 依隣保法每十戶爲一統 五十戶爲一頭目 一百戶爲一摠牌 老少男女盡錄于籍……從之 (『世宗實錄』 卷 81, 世宗 20年 4月 丙寅條).

69) 兵曹據平安黃海道都體察使啓本啓…… 請令本道都節制使與觀察使同議 諸邑軍士 每二十五名 小牌一 五十名 百戶一 一百名 千戶一…… 從之 (『世祖實錄』 卷 15, 世祖 5年 正月 辛丑條).

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농민군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軍翼道 소속의 군인은 翼軍이외에도 別將·守城軍·雜色軍·船軍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世宗 7년에 咸吉道の 軍翼道 편성과 人員이 처음 보고될 때, 그 인원 중에는 別將·守城軍·雜色軍이 포함되어 있고, 定宗 6년에 平安道の 軍翼道 편성에 따른 人員 보고에서 「水陸軍戶子枝」라고 하여 船軍까지 포함되고 있다.

다음으로, 千戶·百戶·統主 등의 관직은 어떠한 관직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太宗 13년 7월 戊戌에 東北面 千戶·百戶의 品階는 上千戶 5品, 副千戶 6品, 上百戶 7品, 副百戶 8品으로 제정하였다. 이보다 좀 앞서, 太宗 13년 7월 丙戌에 水軍의 萬戶·千戶의 관직도 정하였는데 萬戶는 3品, 副萬戶는 4品, 千戶는 5品, 副千戶는 6品으로 제정하였다.⁷⁰⁾ 같은 시기에 翼軍에서는 千戶와 百戶의 品階가 정해지고 水軍 즉, 船軍에서는 萬戶와 千戶의 品階가 정해졌는데 千戶가 5·6品인 것은 동일하다. 千戶 百戶의 관직은 土官이 그러하듯이 특수관직으로 京職에 除授될 때에는 資級을 내려 받아야만 했다.⁷¹⁾ 다만, 土官과 各翼 千戶·百戶의 다른 점은 土官에는 散官이 없고 各翼 千戶·百戶는 散官이라는 데 차이가 있었다.⁷²⁾ 各翼 千戶·百戶는 散官으로 受職하였으며, 千戶·百戶의 受職이 관직에 활용되는 면이 있다면, 西班으로서 守丞을 거치지 않으면 4品職에 오를 수 없었으나 曾經 僉節制使·萬戶·千戶는 守丞의 예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⁷³⁾

各翼 千戶·百戶의 在任기간은 건국초에는 世襲되다가 六期로 제정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世宗 28년에는 平安·咸吉道人으로 萬戶·千戶에 除授된 자일지라도 30朔에 遞任하도록 조처하고 있다.⁷⁴⁾ 그리고, 千戶·百戶의 在任 중에 그들에 대한 考績이 시행되었다. 千戶·百戶의 考績은 每年 두 번 考績하되 五考 중 三上 이상 五上은 加資하고, 三中 이상 五中은 仍資하되, 만약 一下가 있으면 곧 黜待케 하고 仕滿 30개월이면 그 資로서 京官에 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⁷⁵⁾ 이 千戶·百戶의 考績은 대체로 守丞의 考績과 같았다. 그러나, 世宗 32년에는 吉州·鏡城·慶源 등의 各翼 千戶에게 五考 중 三上者는 加資하며 四中 및 一下者는

70) 定水軍萬戶千戶稱號 議政府啓曰 三品以上稱萬戶 四品至六品稱千戶 似無差等 今後三品稱萬戶 四品稱副萬戶 五品稱千戶 六品稱副千戶 從之 (『太宗實錄』 卷 26, 太宗 13年 7月 丙戌條).

71) 兵曹啓 前此受教 咸興平壤土官 准朝官遞降差下 自今各翼千戶及海嶺受職人 請依土官例 亦遞降差下 從之 (『世宗實錄』 卷 54, 世宗 13年 12月 丁酉條).

72) 大司憲柳孟聞等上疏曰 平壤咸興土官之職 不可與朝官比擬 故前此本院 以土官除京職者 不可准資 具辭申請 已蒙降級之命 其各翼千戶 類同土官 而除授京職 尚循舊例 吳得陽 以進勇端川千戶 除進勇副司正 金鐵 以彰信吉州千戶 除彰信司直 准計前資 實爲未便 若曰 土官無散官 而翼千戶有散官 (『世宗實錄』 卷 46, 世宗 11年 11月 甲戌條).

73) 傳旨兵曹 西班未經守令者 不得陞四品 正三品一依東班例 曾經僉節制使·萬戶·千戶者 以守令例論 其以都目陞爲四品者不在此例 (『世宗實錄』 卷 109, 世宗 27年 8月 丁未條).

74) 議政府據兵曹呈啓 依癸亥年十月日傳旨 平安咸吉道恒居人 其道萬戶千戶除授 定爲六期 然右人等家鄉近處 久居其任 不無其弊 且恃其家近 任情往來 儻有緩急 不及應變 今後其道人爲萬戶千戶者 除六期 依他滿三十朔 隨即遞差 從之 (『世宗實錄』 卷 112, 世宗 28年 5月 己丑條).

75) 兵曹啓 請各道萬戶千戶等考績 必須每年兩考 待滿五考 三上至五上加資 三中至五中仍資 若有一下 即黜待 實仕滿三十箇月 以其資拜京官 從之 (『世宗實錄』 卷 23, 世宗 6年 正月 癸亥條).

罷黜하고, 平安道の 千戶도 이 예에 의거하도록 규정되고 있다.⁷⁶⁾

그리고, 各翼 千戶·百戶는 鎭撫·知印·令史 등과 함께 都目遷轉하여 土官에 除授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土官은 散官이 아니며 千戶·百戶는 散官이었으므로 散官인 千戶·百戶는 土官에 除授되기를 바랐다. 軍翼道の 各翼에는 千戶·百戶가 배치되어 있으나 各翼마다 土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平安道에서 軍翼道の 하나인 平壤道の 경우에 各翼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平壤道	┌—中翼 ├—左翼 └—右翼	平壤
		中和·祥原·三登·順安·甑山
		威從·三和·江西·龍岡

위의 府·牧·郡·縣 중에서, 平壤에는 土官이 설치되어 있으나 여타의 郡縣에는 土官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千戶·百戶·統主 등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土官이 설치된 平壤府에는 土官의 東班이 民事를, 土官의 西班이 軍事를 각각 담당하였으나 土官이 없는 郡縣에서는 守令이 民事와 翼의 軍事指揮官을 겸하되, 그 밑에 民事는 知印·令史 등이 맡고 軍事는 千戶·百戶 등이 담당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各翼의 千戶·百戶는 散官으로 봉직하다가 都目遷轉하여 土官에 除授되는 것이다. 그러나, 軍翼道 단위로만 그 산하에서 土官이 除授되는 것은 아니었다. 世宗 12년 兵曹의 上啓에 의하면, 平安道에서 平壤道·寧邊道の 鎭撫·知印·百戶·令史 등은 平壤府 土官에, 義州道·朔州道·江界道·閔延은 寧邊府 土官에 除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⁷⁷⁾ 그리고, 威吉道에서 威興府의 土官은 威興 뿐만 아니라 慶源·吉州·甲山 등의 鎭撫등으로 除授하고 있었다.⁷⁸⁾

그런데, 6鎭 중의 하나인 慶源에서는 土官과 千戶·百戶·統主가 함께 添職되는 경우도 있었다. 慶源은 土官이 설치된 곳이라니와, 그곳에 千戶는 4品限, 百戶는 7品限 그리고 統主는 隊長·隊副로 삼아 土官으로 添職하여 除授하였다.⁷⁹⁾ 이와 같은 慶源의 事例로 미루어 보아 新付의 요새지에서는 各翼의 千戶·百戶·統主가 土官을 겸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在地 有力者에게 千戶·百戶·統主의 관직을 주어 翼軍조직을 편성하였으나 文宗 원년에 그 고장의 長期赴防者에게도 散官을 주어 그들을 장려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⁰⁾

赴防 7년 이상 : 自身은 從9品, 元有階者는 超1資

76) 兵曹據威吉道都節制使陳呈啓 吉州鏡城慶源各翼千戶等都節制使 每於春秋褒貶以聞 而不得加資未便 請上頃各人 五考三上者加資 四中及一下者罷黜 平安道 各翼千戶 亦依此例 從之 (『世宗實錄』 卷 50, 世宗 12年 10月 壬辰條).

77) 兵曹據平安道都節制使關啓 今既新設寧邊府土官 請本道各翼鎭撫知印百戶令史等都目遷轉者 平壤寧邊道 則屬於平壤府土官 義州朔州江界閔延 則屬於寧邊府土官除授 從之 (『世宗實錄』 卷 48, 世宗 12年 5月 甲子條).

78) 兵曹啓……威吉道慶源吉州甲山等官鎭撫 則以初面防禦之功 於威興土官 一年一人 輪次除授 (『世宗實錄』 卷 40, 世宗 10年 5月 辛巳條).

79) 前左軍同知摠制朴礎上言……其一曰 慶源之有高郎居里 鏡城之有龍城 皆賦之岐路 守禦要衝之地也……擇其民中 可爲任事者爲千戶 則限四品 百戶則限七品 統主則爲隊長隊副 皆以土官添設除授 管領其民 (『世宗實錄』 卷 37, 世宗 9年 8月條).

80) 『世宗實錄』 卷 105, 世宗 26年 7月 庚申條.

赴防 17년 이상 : 白身은 正 9 品, 元有階者는 超 1資

赴防 27년 이상 : 白身은 從 8 品, 元有階者는 超 2資

赴防 60세 이상 : 白身은 正 8 品, 元有階者는 超 1資

위와 같은 長期赴防者에게 준 관직은 散官이었거니와, 이러한 長期赴防者에 대한 散官受職의 배려는 건국초의 세습적 권위를 간직하였던 土豪들의 受職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그리하여, 世宗代가 지나고 北方 兩道에도 中央集權的인 통치권이 미치게 되면서 종래의 千戶, 百戶, 統主의 지위에는 새로운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文宗 2년부터 威吉道の 翼千戶는 자기 그 고장에 사는 良家子弟 및 6品 이상의 甲士 중에서 威望이 있고 가히 통솔력이 있는 자를 가려 取才하여 差定하도록 受教하였으나 威吉道 甲山에는 6品 이상의 甲士 및 良家子弟가 없으므로 7·8品 甲士중에서 가려 差定하는 것이 허락되었다.⁸¹⁾ 이러한 사실은 이제까지 在地有力者를 그대로 各翼 指揮官으로 임용해 오던 것을 중앙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赴防甲士 체제로 변동케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平安·威吉道에 일찌기 甲士가 赴防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太宗 10년에 東北面의 赴防甲士 125人의 公廩지급⁸²⁾을 정지케 하고 自備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이때 威吉道에 赴防甲士가 배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世宗 5년에 왕이 兵曹에 傳旨하기를 平安·威吉道の 甲士는 본래 奴婢가 없어 奉足을 주고 있으니 差役에 抽出치 말도록 하고 있다.⁸³⁾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 北方 兩道の 甲士는 千戶·百戶에 비하여 有力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世宗實錄 地理志에 의하면 威吉道の 六鎭과 三水에만 甲士가 214명으로 집계되어 있을 뿐이다. 이 甲士의 수를 상고해 보면, 世宗實錄 地理志는 世宗 14년까지의 기록인데 다만 威吉道の 六鎭과 三水 그리고 平安道の 四郡에 대한 기록만이 세종 14년 이후의 기록을 첨가한 것에 의거한 것이다.

世宗 중기부터 北方 兩道에 甲士의 수가 증가된다. 甲士는 다른 中央軍의 兵種과 함께 확장되어 世宗 22년에 3,000명에서 6,000명으로 증가되고, 世宗 30년에는 7,500명으로 더 증가되었는데 京中甲士가 4,500명, 兩界甲士가 3,000이나 되었다. 다음, 端宗 원년에 甲士의 수는 9,450명으로 증가되어 京中甲士는 5,250명, 兩界甲士는 4,200명이 되었다. 뒤에, 經國大典에는 京中甲士 8,000명, 兩界는 6,800명(平安·威吉道 각 3,400)으로 도합 14,800명으로 되어 있다.⁸⁴⁾

81) 議政府據兵曹呈啓 威吉道都節制便驛呈內 景泰三年受教 節該翼千戶 各其邑居良家子弟及六品以上甲士內 擇有威望可率衆者 取才差定 然威吉道甲山鎭 則其邑內無六品以上甲士及良家子弟 請於七八品甲士中 簡選差定 從之(「端宗實錄」卷 6, 端宗 元年 6月條).

82) 「太宗實錄」卷 19, 太宗 10年 6月 辛酉條. 威吉道都觀察使文金起上本道便宜事 各翼千戶 以四五六品甲士差下……從之(「文宗實錄」卷 13, 文宗 2年 4月 丁丑條).

83) 傳旨兵曹 威吉平安兩界甲士 本無奴婢 其已給奉足 勿令抽出差役 (「世宗實錄」卷 20, 世宗 5年 6月 癸丑條).

84) 車文燮 「鮮初의 甲士」(「史叢」4·5, 1959·1960 : 「朝鮮時代軍制研究」1973) p. 27.

이와 같이, 世宗말 이래 甲士의 증가에 따라 兩界 甲士의 수가 급증되었다. 平安·咸吉道에서 世宗實錄 地理志에는 咸吉道の 6鎭과 三水에만 불과 214명의 甲士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世宗 30년에는 3,000명, 端宗 원년에는 4,200명 그리고 經國大典에는 6,800명으로 증가되어 배치되고 있다.

이러한 甲士의 증가와 함께 文宗 2년에는 各翼의 千戶는 良家子弟와 甲士 중 통솔력이 있는 자로서 差任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在地 地方支配체제를 밀바탕으로 편제된 軍事조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뜻한다. 즉, 종래의 私的 社會支配 구조를 이용한 翼軍의 千戶·百戶는 국가적으로 파악된 赴防甲士체제로 대체되어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北方 兩道에 있어서의 사회 지배구조의 변화는 이 지방의 土官制가 中央集權化의 진전과 北方의 군사적 긴장의 완화로 15세기말에는 그 정치적 군사적 사명을 다하고 폐지되어 가는 것과 상관 관계가 깊다 할 것이다.

結 語

이상으로, 조선 초기의 翼軍에 대하여 그 조직이 정비되는 과정과 軍翼道の 구조 그리고 翼軍조직을 통하여 平安·咸吉道の 社會구조를 살펴보았는데 그 요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기의 翼軍은 고려말에 비롯되거나, 고려는 공민왕 때에 排元政策과 함께 自主的인 군사조직을 편성하면서 西北面과 수복된 지역의 東北面に 翼軍 조직을 편성하였다. 고려말의 翼軍은 農民軍으로 편성되었으며, 제도적으로는 元의 萬戶府 내지 翼軍조직을 본뜬 것 같으나 그 실재는 고려 전기의 州鎭軍 조직을 재편성한 것이다.

조선 건국초에 남방 6도는 중앙에서 직접 파악한 데 비하여 北方 兩道는 翼軍조직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世宗때에 北方 兩道の 軍翼道체제가 정비되는데, 그 구조는 世宗實錄 地理志에 平安道는 平壤道·寧邊道·義州道·朔方道·江界道 등 5軍翼道, 咸吉道는 咸興道·永興道·吉州道·慶源道 등 4軍翼道로서 兩道の 전지역이 망라되어 있다. 軍翼道는 翼軍을 主兵種으로 삼아 他兵種까지도 그 편제 속에 망라하고 있는 軍事단위지역으로 각도마다 道内の 모든 府·牧·郡·縣이 軍翼道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軍翼道는 行政과 軍事가 一元化되어 있으며 兩道の 모든 守令은 軍翼道の 軍事職을 겸임하였으며, 兩道の 守令은 沿邊의 守令과 같이 民事와 軍事를 兼全한 人才로서 보임시키었다.

그리고, 軍翼道체제가 世宗 때에 정비된 것은 중앙정부가 이때에 이르러서야 그 지방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平安·咸吉道の 人口 파악은 태종 4년에 이루어지고, 兩道の 量田이 태종 13년에 완료되었으므로 세종대에는 中央集權의 行政力이 그 지방에 미칠 수 있었으며, 平安·咸吉道の 全地域이 軍翼道체제로 정비될 수 있었던 것이다.

軍翼道에 있어 郡縣의 領屬관계는 界首官制와 거의 일치된다. 고려 전기에 南道는 主牧의 界首官制체이고 兩界는 兵馬使로 하여금 一元的으로 파악하면서도 監倉使 分道將軍 分臺에 의한 分道制가 있었는데, 元 복속하에 이러한 제도가 없어지고, 공민왕代에는 都觀察 黜陟使가 파견되어 南道와 같이 單一的인 行政기구로 통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말까지 兩界의 南道化가 모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조선 건국후 1세기 동안은 平安·咸吉道の 南道化과정이 계속되고, 平安·咸吉道에서 南道の 界首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에 平安·咸吉道에서는 軍翼道체제와 土官制 등 특수한 제도가 운영되었는데, 그것은 고려 전기의 分道制를 계승하면서도 그 형식은 南道の 界首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平安·咸吉道の 軍翼道체제가 道內 全地域의 領屬관계로 되어 있는 데 반하여 南道の 營鎮조직은 道內 全地域을 망라하지 않고 守令과도 관계가 없으며 界首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平安·咸吉道처럼 깊은 관계가 없다.

또한, 軍翼道는 土官이 설치된 곳과 거의 일치되고 있다. 在地 사회지배구조를 군사조직으로 편제한 翼軍은 在地支配구조를 行政기구화한 土官制와 不可分の 관계가 있다. 在地 土豪들은 百姓을 私占하는 有力者이거나 그 권세는 세습되었다. 그것은 국가적 民戶지배에 앞서 私的 民戶지배가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社會支配구조를 군사조직에 활용한 것이 翼軍조직이며, 이 翼軍조직 위에 土官制에 의하여 地方支配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翼軍조직은 千戶, 百戶, 統主에 의하여 관장되었다. 그들이 통솔하는 농민군의 단위는 대체로 千戶가 100戶, 百戶가 50戶 그리고 統主가 10戶이었다. 千戶·百戶·統主는 散官으로 5品 이하 8品에 이르는 관직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京職에의 승진에는 土官과 같이 그 資級에 준하지 못하였다. 千戶·百戶·統主는 처음에는 세습적인 지위이었으나 그 在任기간이 제정되어 六期가 되더니 다시 30朔이 되었다. 千戶·百戶·統主에 대한 考績은 대체로 守令과 같았다. 그리고, 千戶·百戶·統主는 영전하여 土官에 除授되었는데 軍翼道 단위에 한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6鎮에서는 土官과 各翼의 千戶·百戶가 添職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在地 有力層인 千戶·百戶체제에 中央集權的 統治力이 미치면서 새로운 변동이 일어나 文宗 때부터 중앙정부에서 직접 파악되는 赴防甲士체제로 변동되었다. 世祖代에 地方軍制가 국이 一元的으로 軍翼道체제로 확장되었다가 다시 鎮管체제로 정비된 하나의 원인은 이러한 배경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며, 나아가서 土官制가 15세기말에 정치적, 군사적 사명을 다하고 혁파되어 가는 원인도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본고는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